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0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술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우리군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및 농외 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 제품의 원료 사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감경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창군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장비 사용료와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4. 군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제2장 운영 및 이용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 농업인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사용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다만,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구입가격과 농업인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경)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6.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4.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 승인서 (별지 제4호 서식)
5. 생산·작업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
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
3.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그 밖에 농산물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 가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 관련)

기종명	규격	구입 가격	잔존 가격	수리비계수	내구 연한	1일 사용료 징수 항목			1일 사용료 (A+B)*C
						감가 상각비 (A)	수리비 (B)	예상사용일수 (C)	

감가상각비: $(\text{구입가격} - \text{잔존가격}) \div \text{내구년수}$

수리비: $\text{구입가격} \times \text{수리비계수}(0.05)$

[별지 제1호 서식]

가공시설 사용신청서

1. 신청인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별 (해당란에 ○표)	남 여
연락처	일반 :	휴대폰 :	
주소			
2. 사용시설 현황			
시설명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농업기술센터 내)		
3. 신청기간	20 . . . ~ 20 . . .		
4. 신청목적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5. 사용료	평창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	평창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신청인(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공통)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담당직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법인 구성원의 평창군 관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농산물명	
원산지	국내산 (강원도 평창군)

생산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상기와 같이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자 확인 : (인)

평창군수 귀하

가공시설 사용 승인서

승인번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0 -		
1. 신청자			
상호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2. 승인내용			
시설명	평창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사용목적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함.		
사용기간	20 . . . ~ 20 . . .		
3. 특이사항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오니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평 창 군 수

승 인 조 건

1.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제조한 제품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가공시설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가공시설 이용 후 부과되는 사용료를 평창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5.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주요 목적인 농가공경영체 육성과 향후 독립 경영을 위해 사용자는 사용 승인 기간 동안 가공센터 직원들의 지도하에 제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가공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생 산 · 작 업 일 지

생산일자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투입량	비고
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			
포장방법 및 단위		생산량	
작업자		유통기한	
생산 중 특이사항			